

2026년 하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인원	임용 예정일	근무지	담당업무
청원 경찰	1명	'26. 12. 28.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장길 5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센터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대구센터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 대구센터 내 질서유지• 경비구역 순찰, 테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대구센터 경비·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 등

2. 응시 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 복수국적자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2) 18세 이상인 자, 다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5)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우대사항(서류전형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 우대사항

- (경력)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제8호 서식) 제출 시 인정
 -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A기관 4개월, B기관 7개월 경력 제출 시 A기관 4개월 경력 불인정
 - ※ 제8호 서식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발급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 ※ 해당 분야 근무경력에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자격증)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인정
 - 경비지도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복수 인정
 -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각각 동일 종류의 자격증 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무도단증)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 <별첨1>의 단체에 한함

나. 가점사항

- 사회형평가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를 가산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중복 가점 불가(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가점만 적용)
 - ※ 가점은 응시자가 제출한 개별 증명서로 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 특히 2년 이상 등 기간이 특정된 경우, 대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 기간 확인 불가 시 불인정)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2026년 10월 기준)

구분	내 용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
근무형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5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 08:30 ~ 18:30 (휴게 1시간) 교대 근무 : 주-야-비-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근무시간 : 07:30 ~ 18:30 (휴게 1시간) 야간 근무시간 : 18:30 ~ (다음날)07:30 (휴게 3시간) <p>※ 상기 근무형태는 센터가 운영하는 근무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 여건에 따라 추가근로(연장근로 등)를 할 수 있음</p>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그 외의 경력은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 예정 분야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1명)의 5배수(5명) 이상일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각 평가요소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증 등

나. 체력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원본 또는 사본)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지역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인증서

- 인증일자가 공고일('26.10.29.) 이후인 경우만 인정

※ 응시자는 채용공고일 이후부터 발급 준비 권장

2) 합격 기준 : '국민체력100' 인증등급 2등급 이상

구분	인증기준
1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30%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상위30% 이상(신체조성 제외)
2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50%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상위50% 이상(신체조성 제외)

3) 제출 기한 : '26. 11. 20.(금), 18:00까지

4) 제출 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5) 측정 항목 : 체격 및 체력 15개 항목

구분	요인		측정항목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신체질량지수(BMI)
			체지방율(%)
			허리둘레(cm)
체력	건강관련 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트레드밀 검사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민첩성		10m 왕복달리기
			반응시간 검사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체공시간 검사

다. 면접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1) 면접방법 :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분야별 개별면접

2) 평정기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평정 요소마다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평정점수		
① 정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상	중	하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	중	하
③ 조직 내의 리더십 및 협력 자세, 친화력	상	중	하
④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자세	상	중	하
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	중	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항목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순위결정 방법

1.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2.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3. 동점자 우선순위
 - ① 서류전형 총 점수가 높은 사람
 - ② 경력 점수가 높은 사람
 - ③ 자격증 점수가 높은 사람
 - ④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사람
 - ⑤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사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시험 및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6. 10. 29.(목) ~ 11. 5.(목)	'26. 11. 16.(월)	체력시험 '26. 11. 20.(금) 합격자 발표 '26. 11. 24.(화)	'26. 11. 26.(목)	'26. 12. 3.(목)

※ 위 일정은 시험 진행상황,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홈페이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나라일터)에 게재

7.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6. 10. 29.(목) ~ 11. 5.(목)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41007) 대구광역시 동구 도장길 55-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총괄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 응시원서 재증> 기재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분할접수 불가)

※ 단, 변경공고에 따른 응시원서 수정·보완사항은 접수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 택배 및 방문 접수 등 불가

다.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6. 11. 10.(화) 18:00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통보 시 담당자에 확인

라. 제출 서류

-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제1호 서식) 1부
- 2) 응시원서(제2호 서식) 1부
- 3) 이력서(제3호 서식) 1부
- 4) 자기소개서(제4호 서식) 1부
-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5호 서식) 1부
-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6호 서식) 1부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
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제7호 서식) 1부
- 8) 자격증·경력 검증을 위한 동의서(제8호 서식) 1부
- 9)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병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의 경우 병역사항(해당자에 한함)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10) 채용분야 경력(재직)증명서(제9호 서식)

※ 제9호 서식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발급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만 인정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 내용 및 상근여부, 근무형태 등을 정확히 기재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 및 시간제(근무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기업), 발급자 성명(서명 포함)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함
- 기관(기업) 폐업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홈택스 발급)'과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업무내용확인 가능한 서류(근로 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제출

- 11) 자격증 사본
- 12) 무도단증 사본
- 13)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기타(유의) 사항

-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본인이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누락, 연락 불가,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
- ☐ 응시원서가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체력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결과에 미달, 자격증 및 경력 검증의 확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개별통지)
-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 경찰청장이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응시자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반환신청한 자의 서류는 반환(최종 채용합격자는 제외)하며, 반환 신청하지 않는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근무시간 내(9~18시)

원서접수 및 채용절차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총괄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053-669-6211)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7년 1월 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첨2)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메일(유선으로 확인)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53-669-6211

4. 우리 기관은 **2027년 1월 8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 채용 담당자 기재	청원경찰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미제출
〈 필수사항 〉		
1. 응시원서(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제3호 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제4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5호 서식) 1부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6호 서식)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7호 서식) 1부		
7. 자격증·경력 검증을 위한 동의서(제8호 서식) 1부		
8.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의 경우 병역사항(해당자에 한함)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우대 및 가점사항 해당 시 반드시 제출(서류전형 단계 적용)		
1. (경력) 경력(재직) 증명서(제9호 서식) ()부 (경력기간: 월) ※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제8호 서식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발급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2. (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3. (무도단증) 무도단증 사본 ()부		
4.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명서 ()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 프로세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를 절취(훼손) 할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접수 후 채용 담당자가 기재 후 별도 안내)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제2호 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분야	청원경찰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국적:) ☐ 해당없음
주 소	(☎)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화(자택 등)	

응 시 표 (청원경찰) 채용시험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명	(한글)	(한자)	
년 월 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입니다.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제3호 서식】 ※ 반드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구분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제출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자우편)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나. 우대사항						
경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원	가계시설 유지보수	상근/비상근/시간제
						상근/비상근/시간제
						상근/비상근/시간제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검정기관	
	경비지도사	0000년 00월 00일				
	응급구조사 1급					
무도단증	무도명	무도등급	단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다. 가점사항						
관련법률	보훈번호		가점비율		발급처	
국가유공자	000호		10% / 5%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div>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경력사항 기재: 최근 경력을 위쪽에, 과거 경력을 아래쪽에 기재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제4호 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서명)	청원경찰

1. 해당분야의 지원동기 및 관련 경력과 해당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극복한 경험과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 관계 등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근무 자세와 공직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줄간격: 160%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등</u> (*자격 및 경력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청원경찰 채용 관리	<u>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청원경찰 채용 관리	<u>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채용 결격사유, 범죄경력 정보</u>	청원경찰 채용 관리	<u>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u>	청원경찰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경찰청</u>	청원경찰 채용 관리	청원경찰 채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청원경찰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인사혁신처</u>	<u>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u>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6년 하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1월 1일

확인자 :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u>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p> <p>*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해당 ☐</p> <p>비해당 ☐</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p> <p>비해당 ☐</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p> <p>비해당 ☐</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p> <p>비해당 ☐</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p> <p>비해당 ☐</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p> <p>비해당 ☐</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p> <p>비해당 ☐</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성 명

(서명)

자격증·경력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재직)증명서 등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귀하

【제9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시간제)								
	부터	까지											
			<div>*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div> <div>* 비상근/시간제의 경우 주당 업무 시간 반드시 기재</div>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기 관 명 :			년 월 일	<table><tr><th colspan="2">확 인 자</th></tr><tr><td>소 속</td><td></td></tr><tr><td>직 위</td><td></td></tr><tr><td>성 명</td><td>인</td></tr></table>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div>*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div> <div>* 위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급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div> <div>* 응시자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반드시 발급기관 담당자가 작성하고 발급자란에 날인하여야 함</div> <div>* 담당업무 내용, 상근/비상근/시간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div> <div>*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확인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div>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 1.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7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
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별첨 2>

※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분야 ()

연락처 : 휴대전화 ()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동구 도장길 55-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총괄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41007)

연락처 : 053-669-62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